

부속서 I
이스라엘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이스라엘의 유보목록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자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경우, 유보된 특정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언급된 경우, 그리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국내 또는 국제 산업분류코드에 따른, 비합치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관련의무는 제9.12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란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비합치 조치를 규정하거나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되고, “조치”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란 유엔 잠정 중앙품목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년)를 말한다.

5.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은 제10.5조(현지주재) 및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기재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기재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은 제10.4조(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으로도 고려된다.

7.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그 위원회 구성원이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으로만 기재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1조제3항에 따라, 제10.4조(시장접근)에 대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은, 유보내용 요소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1999년 회사법(제115조, 제118A조, 제239조 및 제240조)

유보내용: 투자

상장회사 또는 대중에게 채무증권을 발행한 회사(이하 “채권발행회사”라 한다)는 그 이사회에 최소 2명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이스라엘 거주자이어야 한다.

모든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위원이고 각 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한다. 감사위원회에는 3명 이상의 위원을 두고 보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의 위원을 둔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또는 그 주식이나 채권의 일부를 이스라엘 국외에서 공모했거나 이스라엘 국외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상장회사 또는 채권발행회사는 이스라엘 거주자가 아닌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조치: 1980년 과산법령

1999년 회사법(제350조-제351조)

1983년 회사법령

유보내용: 투자

투자자 또는 투자가 과산 선고 또는 지급불능 선고를 받고 채무채조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스라엘은 그 절차에 필요한 한도에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93년 유해물질에 관한 법률

2011년 석면위험 및 유해분진 방지에 관한 법률

2012년 전기·전자 장비 및 배터리의 환경적 처리에 관한 법률

1959년 물관리법

1994년 유해물질 규정(유해물질 수입 및 수출)

2016년 병해충 방제 관행의 규제를 위한 법률

2011년 포장재 처리에 관한 법률

1990년 사업면허규정(위험물질 폐기물 처리)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유해물질 취급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2. 전기·전자 장비 및 배터리의 환경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기업은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만 고용한다.
3. 특정 유해물질은 환경서비스회사(Environmental Services Company)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4. 석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5. 석면의 해체 및 제거를 수행하는 석면 계약업자의 직원 중 최소 1명은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6. 2011년 「포장재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폐기물의 수출은 재활용 목표의 20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7. 유해물질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분야: 전자서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2001년 전자서명법 (제11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전자인증서의 해외 발행인” 등록은 2001년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대로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전자인증서의 해외 발행인” 외 전자인증서 발행인 등록은 이스라엘 국민이나 거주자 또는 이스라엘에서 설립되어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고 있는 기업임이 요구된다.

5. 분야: 어업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조치: 1937년 어업 규정 (제2조 및 제3조)

유보 내용: 투자

어업면허의 발행, 지속 및 변경을 위해서는 농업부의 승인이 요구된다.
이스라엘은 1937년 「어업 규정」에 따라 외국 국민 또는 기업에 대한
어업면허를 발행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법률 서비스

산업 분류: CPC 861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조치: 1961년 변호사협회법 (제20조, 제42조, 제98조-제98M조)

유보 내용: 투자

1. 이스라엘 법무활동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가 요구된다.

2. 외국변호사는 이스라엘에서 외국법 또는 국제법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여야 한다.

7.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세무 서비스

산업 분류: CPC 863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1년 소득세법령 개정편(제236조)

2005년 세무사법에 의한 대리에 관한 규정(제10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조세당국에 대한 기업의 세금신고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면허를 취득한 감사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면허를 취득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인이 될 수 있다. 세무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가 요구된다.

8.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수의료 서비스

산업 분류: CPC 932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91년 수의사법(제5조 및 제17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2. 이스라엘 거주자 또는 국민이 아닌 외국 수의사는 자문, 수업 및 연구를 위하여 농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9.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타워 크레인 기사, 이동식 크레인 기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타워 크레인 기사 및 이동식 크레인 기사 인증의 갱신 또는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Nb 44167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크레인 운전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10.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조사 서비스

산업 분류: CPC 8730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72년 사설탐정 및 보안서비스법(제4조, 제9조-제11조 및 제1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면허를 소지한 탐정만이 탐정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탐정 및 보안회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설 탐정만 고용할 수 있다.

11.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소독 및 병해충 박멸 서비스

산업 분류: CPC 8740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2016년 병해충 방제 관행의 규제를 위한 법률(제7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12.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소독 및 병해충 박멸 서비스를 제외한 건물청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1996년 사설 인력공급업자의 근로자 고용법

1999년 회사법(제1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건물청소서비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설 인력공급업체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 최소 1명을 직위보유자로 선임한다.

2. 면허 부여 여부는 현지 사무소의 존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이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13. 분야: 커뮤니케이션

하위 분야: 국내 유선전화 서비스, 국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무선 및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2000년 커뮤니케이션규정(통신 및 방송)(국내 유선전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면허 취득 절차 및 조건) 제11조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 제4조-제4H조 및 제6조-제7조

2010년 커뮤니케이션규정(통신 및 방송)(통합 일반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국내 유선전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 지분은 80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75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다. 사장은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2. 국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 지분은 74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다. 사장은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라. 그 기업은 이스라엘에 설립되고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고 있다.

3. 무선 및 이동전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 지분은 80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다. 그 기업은 이스라엘에 설립되고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고 있다.

14. 분야: 커뮤니케이션

하위 분야: 방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1965년 방송공사법(제44C조~제44F조)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제4조~제4H조 및 제6조~제7조)

1998년 커뮤니케이션규정(위성방송면허 조건)(제13조, 제20조 및 제21조)

1990년 텔레비전 및 라디오 제2공사법(제41조 및 제59조)

2014년 공영방송법(제64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유선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수단의 최소 26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 보유한다. 외국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는 면허가 부여되지 않으나,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그러한 기업이 면허 보유자 지분의 최대 10퍼센트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2. 위성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가. 기업 지배수단의 최소 26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 보유한다.

나. 그 기업의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는 이스라엘에 소재한다.

다. 이사회 구성원 및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의 과반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라. 사장 또는 이와 동등한 경영직위에 있는 인은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3. 상업 텔레비전 방송 또는 지역 라디오 방송 운영권 보유자에 대한 지배수단의 최소 51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 보유해야 한다.

4. 위성 및 유선방송을 포함한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각 방송기업은 “조치”요소에 열거된 법령에 정의된 대로, 해당 기업 연간 예산의 일정 금액을 국내 제작에 지출하고 이를 방송하기로 약속한다.

15. 분야: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운전강사

산업 분류: CPC 929의 일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1년 도로운송규정(제213C조, 제247조, 제251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운전 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16. 분야: 관광

하위 분야: 여행 알선 및 대행
관광객 안내 서비스

산업 분류: CPC 7471, 747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7년 관광서비스 규정(관광객 안내)(제2조 및 제9E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관광 안내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2. 면허를 취득한 관광 안내인만 여행 알선 및 대행 업체에 고용되어 이스라엘에서 관광을 안내할 수 있다.

17. 분야: 운송

하위 분야: 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0년 해운법(선박)

1971년 항만 법령

1982년 항만 규정(항해 안전)

1973년 해운법(선원)

2002년 해상규정(선원)

2016년 해상규정(선원)(선박 및 예인선 내 이스라엘 선원배치)

2004년 해운항만청법

2005년 해운법(이스라엘 관할 하에 있는 외국해양선박)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이스라엘 선박등기부에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에 이스라엘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민이나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이스라엘이 해당 선박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이스라엘 선박”).

2. 이스라엘 국민이나 거주자 또는 이스라엘에 설립된 기업이 지배하는 외국 선박은 2005년 「해운법」(이스라엘 관할 하에 있는 외국해양선박)에 따라 이스라엘에 등록된다(“외국 선박”).
3. 이스라엘 선박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외국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의 선원이 있어야 한다.
4. 이스라엘 국민만이 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명서 제공은 해운항만청장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18.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정의된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2013년 항공운항규정(승인된 정비기관) 제25조

유보내용: 투자

이용 가능한 공간이 한정됨에 따라, 각 공항의 기본 정비 및 수리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제한될 수 있다.

19. 분야: 운송

하위 분야: 자동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1978년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감독명령(자동차의 수입 및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 제3조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68조, 제89조, 제92조, 제97조, 제98조, 제136조, 제143조 및 제149조

1999년 회사법 제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자동차를 상업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된다. 면허교부를 신청하는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2.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 또는 거래를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되고 면허보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또는

나. 이스라엘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고, 그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3. 자동차 개인 수입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되고 면허보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또는

나. 이스라엘에 등록된 기업의 피고용인이어야 하고, 그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4.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교통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되고 면허 보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또는

나. 이스라엘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고, 그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5. 이스라엘은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정의된 대로, 특정 교통 관련 제품이 이스라엘 시장 단독에서의 마케팅을 위하여 생산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 자동차 감정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7. 자동차 서비스센터(정비소)의 전문 관리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되고,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기 위

해서는 최소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 관리인이 사업장 내 상주해야 한다.

주 1: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교통 관련 제품”은 자동차의 조립, 유지 또는 적절한 작동을 위하여, 또는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고안된 부속품, 부품, 부품시스템, 정비소 또는 제조업자만 사용하는 작업공구를 제외한 기구, 액체 · 고체 또는 기체인 장치나 물질이다.

주 2: 이 유보목록의 목적상,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주 3: 이 유보목록의 목적상,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이해당사자”는 다음을 말한다:

가. 주요 주주

나. 이사회 구성원 1명 이상 또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 또는

다. 기업에서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으로 재직 중인 인

20. 분야: 운송

하위 분야: 운전면허 및 여객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도로운송 서비스, 자동차 정비
안전 책임자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1년 도로운송규정 제175조-제190조, 제213조-제213H조, 제216조, 제221조, 제221A조, 제247조, 제251조, 제531조, 제567조, 제567B조 및 제582조

도로운송법령 제14조

1984년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감독명령(택시 미터기의 구매, 설치 및 유지)

1999년 회사법 제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1961년 「도로운송규정」 제175조-제185조, 제189조 및 제190조에 따라, 특정 유형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2. 택시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3. 택시 미터기의 설치 또는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은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되고, 택시 미터기의 설치 또는 유지 사업을 운영

하는 기업은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를 두어야 한다.

4. 자동차 정비 안전 책임자로 일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21. 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화물운송

가구운송

운전자를 포함한 상용차 대여

산업 분류: CPC 71233, 71239, 71234, 7124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1년 도로운송규정 제189조

2001년 화물서비스규정 제2조 및 제24조

1997년 운송서비스법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10톤을 초과하는 화물 또는 모든 중량의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2. 화물수송 전문 관리자 및 운영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22. 분야: 운송

하위 분야: 관세사

산업 분류: CPC 749**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4년 관세사법 제4조 및 제5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관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2. 외국 관세법인을 포함한 모든 관세법인은 최소 1인의 면허 있는 이스라엘 관세사를 현역 관리자, 사무원 또는 파트너로 고용해야 한다.